

보험계약 변경 정산액 분할납입 특약 약관 목차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3조 특약의 적용범위 및 체결

제4조 특약의 효력

제5조 특약의 소멸

제6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제7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3관 기타 사항 등

제8조 준용규정

보험계약 변경 정산액 분할납입 특약 약관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이 특약이 부가된 보험계약(특약이 부가된 경우에는 특약을 포함합니다. 이하「보험계약」이라 합니다)의 계약내용 변경시 정산액을 분할하여 납입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해약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3.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평균공시이율: 이 특약을 부가하여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이 특약 체결 시점의 평균공시이율을 의미합니다.

제 2 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3조 [특약의 적용범위 및 체결]

이 특약은 보험계약(특약이 부가된 경우에는 특약을 포함합니다. 이하「보험계약」이라 합니다)의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해 계약자적립액의 차이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계약자가 추가납입하여야 할 금액 중 이 특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적용대상 정산액(이하 「정산액」이라 합니다)이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자(이하「계약자」라 합니다)의 청약과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의 승낙으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제4조 [특약의 효력]

- 제 3 조 [특약의 적용범위 및 체결]에 따라 이 특약이 체결된 때(이하「체결일」이라 합니다)부터 보험계약은 정산액을 일시에 납입한 것과 동일한 계약변경 효력을 가집니다.
- 계약자는 정산액을 대신하여 분할납입기간 동안 분할납입금액에 체결일 시점의 평균공시이율로 계산한 이자비용을 더한 금액(이하 「최종분할납입금액」이라 합니다)을 매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분할납입금액 및 이자비용에 대한 계산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를 따릅니다.
- 제 2 항의 납입기일은 체결일 이후부터 도래하는 보험계약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일로 합니다.
-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는 잔여 분할납입금액을 일시에 납입할 수 있습니다.

- ⑤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종분할납입금액의 납입 완료 이전에 보험료, 계약자적립액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계약자는 잔여 분할납입금액을 일시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⑥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 최종분할납입금액의 납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잔여 분할납입금액을 일시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계약자가 잔여 분할납입금액을 납입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잔여 분할납입금액에 이자비용을 더한 금액을 만기환급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⑦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최종분할납입금액의 납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잔여 분할납입금액을 일시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계약자가 잔여 분할납입금액을 납입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잔여 분할납입금액에 이자비용을 더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⑧ 제 4 항 내지 제 7 항에 따라 잔여 분할납입금액을 일시에 납입하는 경우 잔여 분할납입금액에 직전 최종분할납입금액 납입일 시점부터 일시납입 시점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한 이자비용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자비용에 대한 계산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를 따릅니다.

제5조 [특약의 소멸]

- ① 계약자가 최종분할납입금액의 납입을 완료한 때에는 납입을 완료한 때부터 이 특약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최종분할납입금액의 납입이 완료되기 전에 사망하였을 경우 제 4 조 [특약의 효력] 제 8 항에서 정한 일시 납입금액을 계약자적립액에서 차감하여 지급하고, 이 특약은 더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최종분할납입금액을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납입최고(독촉)와 보험계약의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제7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제 3 관 기타 사항 등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험계약을 따릅니다.